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452

발의연월일: 2023. 1. 12.

발 의 자:소병훈·강득구·김승남

김정호 • 민형배 • 박 정

서삼석 · 안호영 · 어기구

이인영·허 영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973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해양개발연구소로 설립된 해양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관계 법령에 의해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 등을 인정받고 있으나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상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고 있음.

한편,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따라 국유·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·수익할 수 있게 하고, 대부할 수 있는 최장기간을 기존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·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(2021.9.14.)된 바 있음.

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'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'에 포함되고 있으

며, 「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」 부칙(제11145호,2011.12.31.)에 의거 다른 법령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인용할 경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, 실체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인정됨이 타당함.

또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과학기술연구, 해양신산업 발굴·육성 및 산업화 기반 기술 개발, 국가·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체계적 해양과학기술 지원을 전담하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과학기술 연구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,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마찬가지로 해양과학기술원이 안정적이고 원활한 연구·교육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의 조성·지원이 필요함.

이에 국유·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유·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한국해 양과학기술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11조).

법률 제 호

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11조(국유·공유재산의 사용허가·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해양과기원에 대하여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물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고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국유·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「국유재산법」 제35조 및 제46조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,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

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과기원이 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 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유·공유재산의 사용허가·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국유·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혀 행

개 정 안

제11조(국유·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해양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양과기원에 국유·공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하는경우에 그 내용·조건 및 절차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해양과기원의 계약으로 정한다.

제11조(국유·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)
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과기원에 대하여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물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고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국유·공유재 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「국유재산 법」 제35조 및 제46조와 「공 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 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 년 이내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,

<u>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</u> 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「공 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3 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 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 조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 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2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 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.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 과기원이 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「공 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| 제37 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 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